

제 2 군 단 보 통 군 사 법 원 판 결 서

피고인 노00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어나서 판결 선고 내용을 잘 듣고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군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국에 헌신해야 한다. 여기에서 군에 ‘복무’ 한다는 것은 일반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근무’와는 달리, 집단 즉,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군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군사법제도는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일반 사법제도와 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다. 오히려 군기를 확립해야 하는 군내에서는 일반보다 좀 더 엄격한 잣대로서 군기를 저해시키는 요소에 대해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군에서 장기복무를 하던 한 여군 장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하여 불거진 사건이나, 군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에도 군내에 잔존하는 지시·통제 중심의 문화와 상·하급자간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체계 등에 대해 군의 강도 높은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과 더불어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군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군사법의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군인복무규율 제15조에서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면서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3조의 2에서는 상호간의 존경과 존중을 규정하면서 “부하는 상관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상관과 부하간의 상호존중과 배려는 군대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급자인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인격모독적인 지나친 질책과 여군에 대한 비하, 성적 언행 등을 지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사기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까지 저하시켰다.

피고인은 당시 부관참모부의 부서장이자 사단의 참모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에 소속된 부서원이자 참모를 보좌하는 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적으로 서로 밀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평정을 받는 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하겠다. 피고인 또한 부대 지휘관에 대하여는 하급자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또한 상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고 수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직 목표 지향적, 결과 지향적, 상부 지향적인 업무수행자세가 하급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안겼고, 하급자에 대한 높은 기대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훈계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와 질책으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자 군 복무를 지원한 동료이자, ‘ 명예’가 중요한 육군 장교였으나, 피고인은 업무달성에만 급급하여 하급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업무를 지적하는 정도와 횡수가 지나치게 많았다. 또한, 지적을 함에 있어서도 그 수단과 방법이 모욕적인 언사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여군임을 빌미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발언 등 위법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부서장으로서 부하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넘어 이를 남용한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가혹행위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것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하였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전입 후 계속된 피고인의 질책과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성희롱적 발언 및 추행행위 등으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이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일기장과 메모, 유서 등을 통해 이로 인해 받은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또한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가혹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판례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 한정하여 판시한 바 있다. 그리하여 주로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행위를 지시한 경우에 이를 가혹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해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혹행위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체적 고통을 준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본죄의 입법취지가 직권을 남용하여 군인 또는 준군인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따른 가벌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가혹행위는 선진육군의 사기와 미래를 저해하는 요소임은 분명한 바, 보다 엄중하게 벌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곧 군사법제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자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4. 3. 20.

재 판 장 _____ (인)